

어선안전조업법안 (유기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71
----------	------

발의연월일 : 2016. 9. 12.

발의자 : 유기준 · 이종명 · 정갑윤
이은권 · 김성원 · 박명재
정유섭 · 민홍철 · 김도읍
김종희 · 유재중 · 윤상직
장석춘 · 박대출 · 조경태
여상규 · 김성찬 · 함진규
이명수 · 김승희 의원
(20인)

제안이유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충돌, 침몰 등
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최근 6년('09 ~ '14)간 전체 해양사고의 7
0.6%가 어선(매년 1,284건)으로, 인명피해도 59%가 어선원임. 또한 서
해 5도 해역에서는 남·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위협요소
가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어선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대응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나
그동안 체계적인 법률적 ·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었음.

특히, 어선의 안전조업 관리와 접경해역에서의 조업보호와 관련된 현행 규범으로는 「선박안전조업규칙(부령)」, 「어선안전조업규정(고시)」, 「선박통제규정(훈령)」 등이 있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령·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음.

이에 현행 규범의 법리적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이 통합된 규범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과 항행(航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조업을 하는 자는 어선 안전을 위한 정책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과 공동으로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5년마다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 라.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에 대해 출입항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어선

의 출입항을 제한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어선에 대해 조업한계선 · 조업자제선의 월선을 금지하고,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서의 조업과 항행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부과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및 조업정보 제공, 어업인의 안전교육, 어선사고 예방과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어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가 출입항 신고 등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어업의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업허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어선안전조업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과 항행(航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조업”이란 해상에서 어선·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업한계선”이란 조업을 할 수 있는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4. “특정해역”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以南)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5. “조업자제선”이란 조업자제해역의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6. “조업자제해역”이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以東)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以西)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7. “일반해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제외한 해역 중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을 말한다.

8. “항포구”란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 등을 위하여 출항 또는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하는 항구 또는 포구를 말한다.

9. “신고기관”이란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해양경비안전센터, 출장소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신고소를 말한다.

10. “교신가입”이란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주가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무선국개설허가를 받고 어업정보통신국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어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어업지도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항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조업을 하는 자의 책무) 조업을 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과 공동으로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2. 어선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 분석, 감소 목표
3. 어선안전조업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어선안전조업을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선안전을 위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7. 그 밖에 어선안전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출입항신고 등

제8조(출입항 신고) ①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은 어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해역
2.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치안유지나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해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선장 또는 선주는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어선출
입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출입항 항포구의 제한) ① 어선은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출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
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이 항포구에 기항한 경우 어선의 선장은
기항지 인근에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출항 등의 제한) ①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
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특정해역 등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제11조(월선의 금지) 어선은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출어등록) 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은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어등록의 절차·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①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춘 어선으로 조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특정해역 주변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해역 주변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해역 및 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해역 이남의 일반해역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제15조(어선의 선단(船団) 편성 조업) 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여야 한

다.

② 무선설비가 없는 어선으로서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2조에 따른 영해 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밖의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무선설비가 있는 어선과 선단을 편성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및 선단 조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① 국방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조업 또는 항행을 즉시 제한하지 아니하면 어선의 안전한 조업 또는 항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시·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7조(군부대장의 통제) ① 서해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해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에 대한 어선의 출입항, 조업 또는 항행은 그 지역의 관할 군부대장의 통제를 받으며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신고기관은 관할 군부대장의 통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군부대장이 지명하는 장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제에

불응하는 어선에 대하여 정선·회항명령 및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 통제 등의 범위 및 방법과 승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동해 및 서해 특정해역의 조업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 조업보호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조업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2. 어선의 출입항 및 출어등록의 현황 파악과 출어선(出漁船)의 동태 파악

3. 해양사고 구조

4. 조업을 하는 자의 위법행위의 적발·처리 및 관계기관 통보

5. 특정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의 통제

②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

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2. 조업정보의 제공
 3. 월선·피랍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
 4. 해상통합방위 지원사업
 5. 한·일,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업어선 관리
 6. 어업인 안전교육
 7.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
 8.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업정보통신국(이하 “통신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통신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신국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신국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① 「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 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주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이 주로 출입항하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통신국에 교신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한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통신국에 그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치통지, 어선의 위치확인 방법, 위치통지 미이행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선장의 의무) ① 어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통신국으로부터 위험상황을 전 파받거나 대피하도록 통보를 받은 경우에 자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은 대피상황을 즉시 통신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2. 해양경비안전관서 함정

3. 해군함정

③ 선장은 조업 또는 항행 중 제2항 각 호의 선박으로부터 총리령

으로 정하는 정선신호에 따라 정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선하여 응답하거나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구명조끼의 착용) ① 조업을 하는 자는 기상특보 발효 등 해양 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 발생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업을 하는 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안전조업교육) ① 어선의 선주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안전조업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업교육의 종류, 시행기관, 실시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재정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선의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행정처분) 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행정처분권자”라 한다. 이하 같다)은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의 허가나 면허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허가, 면허, 신고, 등록(이하 “어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업허가등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출어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어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8조제3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10조에 따른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월선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6. 제13조에 따른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및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특정해역 주변해역에서 조업 및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8.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단에서 이탈한 경우

9. 제16조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제17조에 따른 군부대장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정선명령·회항명령에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행정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어업허가등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일정 장소를 정하여 그 어선을 계류시킬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등의 취소·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① 「수산업법」 제72조의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행한다.

- ② 어업감독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별칙

제28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월선의 금지를 위반한 자
2. 제13조에 따른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및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자
3. 제17조에 따른 군부대장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정선명령·회항명령에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신국에 교신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신국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함정이나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위험 및 대피 신호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 출입항한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항지 인근에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권자가 부과·징수한다.

④ 행정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횟수 및 그 밖의 사유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